

이 자료는 **12월 28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7일(목) 12시**]

배포일	2018년 12월 26일(수) (총 7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담당자	신국범 팀 장 (043-880-5631) 곽주현 조사관 (043-880-5648)

식품·장난감 모양의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화장품 방향제·비누 전자담배 등 여과 없이 유통돼 -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장난감을 모방한 제품 여과 없이 유통,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높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식품·장난감 모방제품 유형]

(단위: 개, %)

구분	식품 모방				제품 모방			계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기타	생활용품	장난감	캐릭터	
화장품	14(60.9)	3(13.0)	5(21.7)	1(4.4)	-	-	-	23(100.0)
방향제·향초	11(55.0)	7(35.0)	2(10.0)	-	-	-	-	20(100.0)
고형비누	5(50.0)	4(40.0)	-	1(10.0)	-	-	-	10(100.0)
전자담배	2(20.0)	1(10.0)	7(70.0)	-	-	-	-	10(100.0)
라이터	-	-	-	-	6(60.0)	3(30.0)	1(10.0)	10(100.0)
계	32(43.8)	15(20.6)	14(19.2)	2(2.7)	6(8.2)	3(4.1)	1(1.4)	73(100.0)

[식품·장난감 모방 사례]

			
사탕 모방 입욕제	딸기잼 모방 팩	컵케익 모방 립밤	음료수 모방 방향제
			
마카롱 모방 향초	치킨 모방 비누	바나나 모방 전자담배	장난감 총 모방 라이터

□ 대부분 제품 주의 및 경고표시 없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및 경고표시 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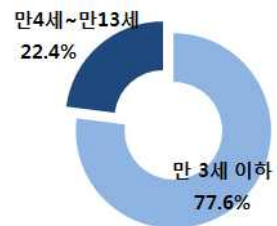
구분	주의표시	경고표시
표시	31(42.5)	15(20.6)
미표시	42(57.5)	58(79.4)
계	73(100.0)	73(100.0)

□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삼킴사고 빈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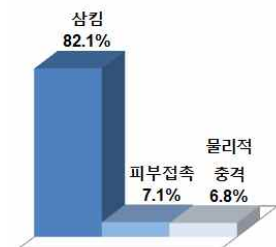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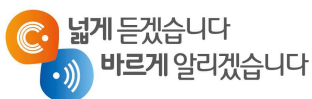
[위해원인별 현황]

□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일반 현황

가. 정의

- 어린이 식품·장난감 모방 포장 제품이란 장난감과 식품이 아닌 제품들이 식품과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어린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을 말함.
 - 주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입욕제 등 화장품, 비누, 전자담배, 라이터의 판매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품을 장난감·식품 등으로 모방 포장해 판매하고 있었음.

나.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관련 규정

- (라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준 부속서(5. 가스라이터)에 따라 가스라이터에 한해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외형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기름라이터, 전기 충전식 라이터는 제외)

<안전인증기준 부속서5. 가스라이터>

6.1 외 형 가스라이터의 외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어린이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가진 외형
비고(예) - 사물 동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외각 또는 비슷한 크기 모형을 나타내는 외각 등
- ② 가스라이터 몸체에 부착물을 붙인 것과 붙일 수 있도록 된 외형
- ③ 가스라이터에서 빛이 발산되거나 소리, 또는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제품

- (기타)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의 경우,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관련 규정은 부재함.
 -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장품) 「화장품법」
 - (고형비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자담배) 「담배사업법」

□ (국내외 규정비교)

구분	한국	유럽연합	영국	미국
식품오인 관련	-	모든 제품 식품 모방 금지	모든 제품 식품 모방 금지	-
화장품	-	식품 모방 금지	-	-
라이터	외형 규제 (가스라이터)	어린이 호기심 자극하는 외형 금지 (모든 라이터)	-	어린이 호기심 자극하는 외형 금지 (모든 라이터)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식품·장난감 등 모방 제품 73개
 - 화장품(23개) : 입욕제 9개, 바디제품 6개, 마스크팩 4개, 립 제품 4개
 - 생활화학제품(20개) : 향초 10개, 방향제 10개
 - 고형비누(10개)
 - 전자담배(10개)
 - ライター(10개)

가. 모방 유형

- 모방유형으로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등 식품을 모방한 제품이 63개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활용품, 장난감 등을 모방한 제품은 10개 (13.7%)였음.
 - (화장품) 제과 모양이 14개(60.9%), 음료수 모양 5개(21.7%), 과일·채소 모양 3개(13.0%) 등의 순이었음.
 - (방향제·향초) 제과 모양이 11개(55.0%), 과일·채소 모양 7개(35.0%), 음료수 모양 2개(10.0%) 순이었음.
 - (고형비누) 제과 모양이 5개(50.0), 과일·채소 모양 4개(40.0) 등의 순이었음.
 - (전자담배) 음료수를 연상시키는 도안의 포장이 7개(70.0%), 제과류 도안 2개(20.0%), 과일 모양 1개(10.0%)의 순이었음.
 - (ライター) 열쇠고리 등 생활용품 모양이 6개(60.0%)로 가장 많았고, 장난감 모양 3개(30.0%), 캐릭터·동물 도안 1개(10.0%) 순이었음.

[조사 품목별 모방 현황]

(단위 : 건, %)

구분	식품 모방				제품 모방			계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기타	생활용품	장난감	캐릭터	
화장품	14(60.9)	3(13.0)	5(21.7)	1(4.4)	-	-	-	23(100.0)
방향제·향초	11(55.0)	7(35.0)	2(10.0)	-	-	-	-	20(100.0)
고형비누	5(50.0)	4(40.0)	-	1(10.0)	-	-	-	10(100.0)
전자담배	2(20.0)	1(10.0)	7(70.0)	-	-	-	-	10(100.0)
ライター	-	-	-	-	6(60.0)	3(30.0)	1(10.0)	10(100.0)
계	32(43.8)	15(20.6)	14(19.2)	2(2.7)	6(8.2)	3(4.1)	1(1.4)	73(100.0)

나. 주의 및 경고표시

-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등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 (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의표시) 방향제·향초와 화장품, 고형비누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세요”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시해야 하나 표시한 제품은 화장품은 23개 중 19개(82.6%), 방향제·향초는 20개 중 6개(30.0%), 고형비누는 10개 중 6개(60.0%)였음.
- (경고표시) “장난감이 아니니 가지고 놀지 마세요”, “식품이 아니니 먹지 마세요” 등 섭취 경고 표시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은 화장품 11개(47.8%), 방향제·향초 2개(10.0%), 고형비누 2개(20.0%)였으며, 전자담배·라이터 전 제품은 표시가 없었음.

[주의 및 경고표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주의표시	경고표시
표시	31(42.5)	15(20.6)
미표시	42(57.5)	58(79.4)
계(%)	73(100.0)	73(100.0)

[경고표시 예시]



3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사례 분석

- (연도별)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연도별 어린이 위해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합계
건수	102(26.8)	119(31.3)	88(23.2)	71(18.7)	380(100.0)

- (연령별)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295건(7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1세 미만	1~3세	4~6세	7~13세	합계
건수	48(12.6)	247(65.0)	39(10.3)	46(12.1)	380(100.0)

- (품목별) 생활화학제품으로는 세제류가 122건(53.7%)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류 55건(24.2%) 등의 순이었으며, 화장품은 세정용 60건(39.3%), 네일용 39건(25.5%), 기초용 19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세제류	방향제류	방습제	보냉제	기타	합계
건수	122(53.7)	55(24.2)	37(16.3)	9(4.0)	4(1.8)	227(100.0)

[화장품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세정용	네일용	기초용	헤어용	기타	합계
건수	60(39.3)	39(25.5)	19(12.4)	12(7.8)	23(15.0)	153(100.0)

- (위해원인별) 삼킴 사고가 312건(82.1%), 피부 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이 26건(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위해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삼킴	피부 접촉	물리적 충격	기타	합계
건수	312(82.1)	27(7.1)	26(6.8)	15(4.0)	380(100.0)

- (위해증상별) 체내 이물질이 166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손상이 99건(26.0%), 중독 52건(13.7%), 구토 29건(7.6%),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19건(5.0%) 등의 순이었음.

[위해증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체내 이물질	피부 손상	중독	구토	소화기 손상	기타	합계
건수	166(43.7)	99(26.0)	52(13.7)	29(7.6)	19(5.0)	15(4.0)	380(100.0)